##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7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 : 엄태영 · 김태호 · 박형수

권영진 • 조지연 • 박덕흠

서천호 · 강명구 · 정동만

김재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	
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	
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	
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	
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지	<u>2028년 12월 31일</u>
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	
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	

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	
외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